

양주시 읍·면·동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1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2008. 5. .

제 출 자 양 주 시 장

□ 제안이유

“양주시자치법규 일제정비 위원회”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조사에 의거 발췌된 일부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가. 사용료 관련 규정 개정(안 제7조제4항)

징수한 사용료를 시장이 따로 정하게 한 사항은 현실성이 없이 이를 삭제 하고자 함

나. 복지회관 명칭및 소재지 변경(안 별표 1)

복지회관 명칭과 소재지가 “00”으로 표기되어 있어 정확한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하고자 함

양주시 조례 제 호

양주시 읍·면·동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양주시 읍·면·동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제목 “양주시읍·면·동복지회관운영조례”를 “양주시 읍·면·동복지회관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7조제4항을 삭제 한다.

[별표 1]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·과·소		기획감사담당관실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직위·성명	기획감사담당관 백 윤기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의회법무담당 김 정식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김 정식(820-2061)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양주시읍·면·동복지회관운영조례</u>	<u>양주시 읍·면·동복지회관 운영 조례</u>
제7조(위탁관리) ④ 수탁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지방재 <u>정법시행령 제91조 및 제92조,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이 따로 정한다.</u>	제7조(위탁관리) ④ <삭 제>

[별표 1]<개정전>

복지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(제2조관련)

명 칭	소 재 지
회 천 ○ 복 지 회 관	- 양주시 ○○동 산 44-12
양 주 ○ 복 지 회 관	- 양주시 ○○동 123-3
은 현 복 지 회 관	-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산 22-2

[별표 1]<개정후>

복지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(제2조관련)

명 칭	소 재 지
회 천 복 지 회 관	- 양주시 회정동 421-17
양주노인복지회관	- 양주시 남방동 123-3
은 현 복 지 회 관	-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산 22-2